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 6]

조례 제408호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 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 622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4조(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0. 30]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괴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장
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4. 대한적십자봉사회 증평지구 협의회장
5. 자유총연맹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6. 북한이탈주민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 10. 30>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과장
2. 괴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장
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
4. 대한적십자봉사회 증평지구협의회장
5. 한국자유총연맹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5. 10. 30]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1. 8, 2015.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회의) ①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13조 삭제 <2022. 12. 29>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의2(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절차 등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⑥ 까지 생략

②⑦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⑧ 부터 ⑥⑩ 까지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5. 10. 30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